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인식 비교

전동일*, 김낭희**, 서정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Dong-Il Chun*, Nang-Hee Kim**, Jeong-Min Seo**

Kang 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Welf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인권, 인권 인식,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장, 인권침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Using data from the ‘2014 Human Rights Survey on Disability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602 facilities, the study compared their perception of human rights(16 items), including human rights guarantee(12 items) and human rights violation(4 items). Result showed that the rate of percep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nd violation(except staff violation) of staffs was higher than people with disabilities($p<.05$).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an right percep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The cause of this difference would be the conflict between roles of staff and need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absence of human rights indicators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two. Our findings suggested a need for study on strategies to solve gap of perception between the two, such as integrated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ing consensual human rights indicators.

Key Words :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erception of human rights,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human rights protection, human rights violations

Received 26 May 2016, Revised 18 July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Jeong-Min Seo

(Institute of Social Welf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dunord@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고립된 환경과 자기 방어의 한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물론 최근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시설 내의 장애인이 겪게 되는 폭행 및 학대, 금전착취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회계 운영의 불법적 행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설이나 종사자 등이 장애인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는 인권침해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시대에도 잔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갖고 있는 역할의 이중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종사자의 역할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과 시설 유지 관리의 이중적 역할이 병행된다. 시설에 의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와 장애인의 욕구가 충돌할 때, 혹은 시설 유지와 종사자의 인권적 욕구가 상반될 때 종사자의 인권 인식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1970년 UN의 「장애인 재활 10년 선언」이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UN은 이후에도 '정신 지체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2년),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년) 등을 발표하였고, 1983년부터 'UN 장애인 10년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도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이슈화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와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정책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며 장애인 인권의 이슈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복지시설 내 장애인 인권보장의 긍정적 변화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의 인권문제는 제도와 법 정비를 통한 정책적 지

원에 의해 과거와 달리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1996년 에바다 농아원 장애인의 인권 투쟁, 2012년 광주 인화학교의 도가니 사건 그리고 인강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는 하나 곧 잊혀지고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 역시 사라진다. 2016년 1월 7일 SBS에 인강원의 전 원장 및 교사 법정 구속¹⁾ 뉴스가 보도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잠시 부상하였으나 이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곧 지워졌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회적 비난은 매우 강하나 처벌규정이 없거나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가칭 「장애인학대방지법」과 같은 형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인권옹호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어 대응방안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피해 구제절차와 지원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변화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정부와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4월 인권침해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협동으로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기 조사는 장애인, 종사자, 시설의 세 영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보장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특히 602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관련 정책이나 현황을 기술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비교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과 종사자 각각의 인권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두 집단 간 인권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과 종사자의 조화로운 삶의 향유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인권인식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49366&plink=ORI&cooper=NAVER

의 차이를 검증하고, 그러한 차이가 타당한지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인권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권과 장애인 거주시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인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다른 보편적 권리보다 우선하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실현을 위해 법적 권리, 공동체,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동의로 제시된다. 인권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존엄한 삶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12].

그러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권리의 동등성이나 구조관계에 따라 다양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인권보장보다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가지며, 이와 같은 보충적 서비스마저도 보장받기 위해 대부분 특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예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관련 규정을 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통해 개인의 인간적인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서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3]. 또한 그러한 취업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감도 감수해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인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이다[10]. 장애인 거주시설 및 거주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거주시설 내 장애인에게 시설 거주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 문제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유를 갈망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통제가 불가피한 거주시설의 특성이 상반되게 교차하는 곳으로서 시설 내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의 폭에 따라 크

고 작은 인권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욕구의 기준과 종사자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도 차이가 있어 거주시설은 인권 관련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범인, 시설, 종사자, 장애인 등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서로 맞물리면서 인권보장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찾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거주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가 인지하는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의 범위가 구체적이거나 체계화되지 않아 시설 내 인권문제는 그 해결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2 선행연구검토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 연구는 옥필훈[9]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와 인권 복지에 관한 연구, 권건보[1]의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 검토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을 개념적으로 확인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검토한 정용중[13]의 연구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을 논의한 서미경[6]의 연구 등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관련 연구는 인권 초기단계의 현황 연구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실태[2]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한 연구[11]가 있다. 위의 두 논문은 인권침해의 실태를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갈등과 복잡한 문제의 특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5].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인권 인식에 관한 연구는 박경수 외[5]가 개별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인권의식과 장애인 인권보장의 간극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그 외 참여관찰, 개별 인터뷰, 문서분석을 활용하여 시설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 김미옥 외[7,8]의 연구도 있다.

한편 조영숙 외[14]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대해 검토하며 시설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 등의 공적 역할이 중요함을 제언하였다. 그 외 장애아동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5]

<Table 1> Research object number

Division	Total	Disability Types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fant Disability
		physically challenged	visually impaired	hearing impaired	intellectual disabilities		
welfare facilities	602	53	16	8	297	219	9
numbers	27,168	2,316	753	317	11,971	11,347	464

Source. Chun et al.,(2014)

나 장애인 거주시설 실천가의 인권딜레마 연구[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연구[4]가 있다. 장애인 인권 연구의 대부분이 사례연구나 소표본 연구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인권 침해 상황을 서술하는데 국한되는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기관은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이다. 장애인, 종사자 그리고 시설 영역을 구분하여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종사자의 응답자료 중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매칭하여 재구성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분석자료는 전동일 외[16]에서 활용한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기 연구의

3.2 분석항목

'201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자료 중 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 총 16개 항목에 대해 거주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인식률을 비교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장애인 조사표와 종사자 조사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Table 2>와 같다. 인권보장

<Table 2> Compare questionnaire of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staff

Division	The disabled	The staff
Human Right Guarantee	Freedom of going out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freely go out of
	Freedom of sleeping out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freely sleep out
	Freedom of dating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freely dating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freely utilizing the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The right to be treated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not receive treatment
	The handicapped aids recipient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use the handicapped aids
	Freedom of religion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go out for religious participation
	Freedom of beauty care	Rate think that disabled people are able to decide to hair style
	Reflect of Formal objection	Response rates for appeal
	Right to take comfortable bath	Frequency of bath Support by Homosexuality
Human Right Violations	Forced labor	Frequency of instructions of informal work
	Violence I	The rate of inclusion Violence II A and B
	Violence II	A) Rate watching staff's violence to handicapped people B) Rate watching handicapped people's mutual violence C) Personnel actions for the assault of staff

Source. Re-edit Chun et al.,(2014)

영역의 12개 항목은 ①외출의 자유, ②외박의 자유, ③이성교제의 자유, ④통신의 자유, ⑤보건권(치료받을 권리), ⑥보조기구 지급 받을 권리, ⑦종교의 자유, ⑧종교행사에 참여할 자유, ⑨종교행사참여를 위해 외출할 자유, ⑩미용의 자유, ⑪이의신청 수용권, ⑫목욕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침해 영역의 4개 항목은 ①강제노역, ②폭행, ③종사자의 폭행, ④상호 폭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응답자료를 다 대다(N:M) 매칭하여 두 집단의 기관별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개별 기관별로 소속된 거주 장애인의 인권 인식률 평균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인식률 평균을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함의

4.1 연구결과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인권보장 영역 중 ‘외출의 자유’ 항목을 예를 들어 해석해 보면, 장애인의 50% 가 시설 내에서 외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인식하

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중에서는 95%가 장애인의 외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외출의 자유에 대한 두 집단 간 인권인식률의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체를 보면,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반되는 의미의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에 대한 인식률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가 인권보장, 인권침해에 대해 상호 간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에게 보호와 통제의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인식되며, 동시에 종사자 역시 시설 내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설이나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인권적 욕구가 충돌하는 것이다. 종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인권보장, 인권침해에 대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

<Table 3> Differences between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e staff

Division	Mean		Paired sample test	
	The disabled	The staff	The average difference	t
Human Right Guarantee	Freedom of going out	50.8790	95.5358	-44.6494 -45.037 ***
	Freedom of sleeping out	47.4858	93.3862	-45.8894 -45.018 ***
	Freedom of dating	25.1484	39.3245	-14.2152 -9.197 ***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48.7332	81.8034	-33.0670 -32.991 ***
	The right to be treated	46.7526	91.8188	-45.0789 -46.027 ***
	The handicapped aids recipient	58.9617	93.6959	-34.7790 -23.675 ***
	Freedom of religion	31.1417	87.3334	-56.2143 -52.053 ***
	Freedom to attend religious rituals	43.7593	96.1319	-52.4100 -56.527 ***
	Freedom to go out for attending religious rituals	36.1886	88.5478	-52.3402 -46.341 ***
	Freedom of beauty care	49.9984	81.8034	-31.8018 -31.345 ***
	Reflect of Formal objection	43.1731	83.5581	-40.3848 -41.434 ***
	Right to take comfortable bath	31.2288	89.0466	-57.8079 -70.897 ***
Human Right Violations	Forced labor	2.7369	30.0884	-27.4015 -31.019 ***
	Violence I	4.6021	27.6239	-23.0503 -20.979 ***
	Violence II : staff's violence	1.5683	0.9305	0.6363 3.450 ***
	Violence II : mutual violence	3.7103	24.7081	-21.0214 -20.881 ***

자 간 구체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출을 요구했을 때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상 외출이 불가한 경우 종사자들은 이를 인권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않으나 장애인은 이를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과 종사자가 각각 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인권인식률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4.2 논의 및 제언

연구결과에 의한 논의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과 종사자가 인권보장,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인권 인식 수준은 종사자의 인권인식 수준과 많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권보장, 인권침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종사자의 인식률이 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지도점검 등으로 시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차이가 단순히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양자의 인권인식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의 통합 인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순한 인권인식의 차이를 넘어 시설에서 실제로 인권보장이 되고 있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연구 결과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종종 발달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설문에 일관되게 긍정 또는 부정의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여 현장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인권실태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성과 수월성이 확보되는 정책과제부터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과제들은 법령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법령개정은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령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거주시설 내 인권보장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조속히 적용하고,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지침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방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자 및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인을 활용하면 비용 대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외부인의 왕래가 적은 시설에 대해 성년후견제도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후견인이 방문하여 시설 내 인권지침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감시는 초기에는 거주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을 위한 시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거주시설의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의사표현 및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권침해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함께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주장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인권침해에 대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의사표현능력, 자기주장 훈련은 인권 신장과 자유권 향유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되므로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도적 정비를 통한 법적, 행정적 처벌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거주시설 이용자와의 인권보장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율되는 시설에 비해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 한편 처벌과 병행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추후 후속연구로 보완하되 구체적인 처벌 기준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신뢰도 있는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지표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한 조사는 실제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권실태 현장조사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가 상호 의견을 교류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표를 개발한다면 동일한 시설 내에서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의 격차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권실태조사의 개선을 위한 세부 매뉴얼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전술한 조사지표의 측정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사원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신체적, 인지적 특성상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각, 청각 그리고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조사원들이 신뢰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과 종사자 간 집단 비교연구를 넘어 인권 인식에 대한 다양한 집단별 비교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장애 인시설의 특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장애 영역별 인권인식의 차이 분석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인권은 어느 시설에서나, 누구에게나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Geon-Bo Kwon.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 39, pp. 517-542, 2012.
- [2] Han-jin Cho, Young-Shin Ko, Jung-Ran Kwak, Sung-Yub Kim, Hee-Sun Kim, So-Youn Lim, Hee-Jung Choi, "Research community mental handicapped human rights situation through case stud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6.
- [3] Hyung-Shik Kim & Ji-Young Kim, "Human Right & Social Work, Seoul: Nanam (Trans) 2011. Jim Ife. Human Right and Social Work, Cambridge Univ press", 2007.
- [4] Hyun-Suk Shin, "A Case Study on Human Rights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 8 No.1, pp. 87-100, 2011.
- [5] Kyung-Su Park & Hae-Kyung Chang, "Case Study on Human rights Dilemmas in Living Facility for the Disabl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 22, pp. 249-272, 2013.
- [6] Mi-Kyung Seo, "The Assuranc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5, pp. 231-254, 2003.
- [7] Mi-Ok Kim & Kyung-Hee Kim. "A Qualitative Case Study on Rights-Based Social Work Practice in a Residential Facili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1, pp. 29-55, 2011.
- [8] Mi-Ok Kim, Jin-Kyung Jung & Hee-sung Kim,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cused on perceptions of worke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Social Welfare Policy, Vol. 33, pp. 389-422, 2008.
- [9] Pil-Hun Ok.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Welfare for the Disabled", Human Right Vol. 15, 27-51, 2014.
- [10] Reichert, E. "Understanding Human Rights : An Exercise Book". Sage Publications, Inc. 2006.
- [11] Sung-Taek Lim.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facility of the disabled", The Justice Vpl. 128, pp.7-59. 2012.
- [12] Sun-Young Jung, Sang-Gil Kong, Eun-Kyung Im, Duk-Hee Chun, Young-Rim Oh,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in the Vagabond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1, pp. 263-289, 2010.
- [13] Yong-Chung Jung. "The responsibility & the role of the Rehabilitation Welfare Center for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12, No. 2, pp.25-44, 2015.

- [14] Young-Suk Cho & Young-sun Chung, "A study on the worker's human rights perspective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Vol.4, No.2, pp.81-93, 2013.
- [15] Young-Suk Cho.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tatus and improvement in resident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Vol.5, No.1, pp.51-69, 2014.
- [16] Dong-Ill Chun, Jeong-Min Seo, Jung-Suk Han, Jong-Phil Won, Kyung-Hee Ro & Yu-Mi Kim, "Improvement Study for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Disabled·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4.

전 동 일(Chun, Dong Il)



- 2001년 2월 : 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문학석사)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자료분석
- E-Mail : iloveu@kangwon.ac.kr

김 낭 희(Kim, Nang Hee)



- 200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 연구원
- 관심분야 : 약물(마약) 중독, 사회서비스
- E-Mail : chanter@hanmail.net

서 정 민(Seo, Jeong Min)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신학과(신학사)
- 2013년 9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박통합과정(문학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박사후 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

자료분석

- E-Mail : dunord@hanmail.net